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시급한 필요성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the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Eun-Cheol Park

Editor-in-Chie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Korea

Although 1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Plan is a 5-year basic long-term plan that covers the whol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is Plan should point to the direction of 30 long-term plans of healthcare, and this Plan should serve as a combination and coordination of 30 long-term plans and 22 related law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established long-term healthcare plans (4-, 10-, and 20-year plans, respectively). The long-term health plan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approached bottom-up, those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been approached top-down.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that Korea is and will be experiencing emphasize urgently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Keywords: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Long-term plan; Necessity; Urgency

서 론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은 총 98개이고, 이 중 4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1]. 이 네 가지 기본법들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검진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5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외한 세 가지 장기계획은 두 차례 이상 수립되었으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다.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0년 7월 13일 시행되었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만 19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제1조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1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이다[2].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둘째,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셋째,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넷째,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다섯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여섯째,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일곱째,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여덟째,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또한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8-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진행해 왔었다. 2003년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의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3], 2007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안)[4], 2015년 미래 보건의료발전계획 정책과제 개발 연구[5] 등이다. 2018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2005년 국무총리 주재로 두 차례 개최된 후 13년만이다[6].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말까지 연구용역(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진행하고, 2019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6], 2019년 8월 현재까지 연구용역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국무회의에 상정된 바 없다.

미국의 경우 2018년 2월 28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는 4년 주기 계획인 “보건부 전략계획: 2018-2022 (HHS Strategic Plan FY 2018-2022)”을 발표하였다[7]. 이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과 2010년 정부성과·결과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에 의거한 것으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해 2월 첫째 주 월요일에 발표하도록 명시화되어 있다. 미국 HHS의 장기계획은 HHS의 14개의 참모부서와 11개의 운영부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HHS 산하 조직들의 계획을 종합하여 HHS 전체의 계획으로 작성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NHS England)에서 2019년 1월 10년 계획인 국가보건서비스 장기계획(NHS Long Term Plan)을 발표하였는데[8], 2012년 건강·사회복지법(Health and Social Care Act)과 2014년 복지법(Care Act)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전의 국가보건서비스(NHS) 5년 조망(Five Year Forward View)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9]. 한편, 영국 공중보건(Public Health England)은 2016년 4월 4개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the next four years: better outcomes by 2020)을 발표하였으며[10],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는 보건사회복지부 계획(DHSC Single Departmental Plan)을 발표하고 있다[11]. 한편, 일본의 경우 보건노동후생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에서는 2015년 6월 보건의료 2035 (Japan Vision: Health Care 2035)를 발표하였다[12]. 이는 20년의 장기계획이며, 또한 2020년의 중간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장기계획은 향후 10년과 20년의 계획이고, 이들 장기계획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건의료가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기에 목적(goal)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장기계획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수립하여 미국 HHS의 참모부서와 운영부서 전체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를 집약한 것으로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담당부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은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들의 집합이기에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및 결정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재의 상태가 파악되어야 하고(what are we now?),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where do we want to be?),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how do we get there?)이 포함되어야 한다[13,14].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장기계획의 기본이 된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은 52개가 있으며 이중 30개의 법률에서 장기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1,15]. 따라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이들 30개의 장기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장기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22개의 법률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하향식(top-down)으로 다른 보건의료 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장기계획 목적과 목표들의 상향식(bottom-up) 결합체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째 수립되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빠른 시일에 수립되어져 보건의료와 관련된 장기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들 장기계획과 관련 법률의 조정 및 결합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비감염성질환시대, 4차산업혁명, 한반도의 통일 등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보건의료가 가야할 방향이 제시되고 [16-20],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는 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ORCID

Eun-Cheol Park: <https://orcid.org/0000-0002-2306-5398>

1) 30개의 장기계획 중 수립된 장기계획은 25개이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지 않은 장기계획은 5개이다[15].

REFERENCES

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jo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ited 2019 Aug 25].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2.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No. 14558 (Jun 12, 2019).
3. Committee for Health and Medical Development. Participatory Government's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proposal).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3.
4. Lee SY, Cho JK, Hwang NM, Seo MK, Yoon GJ. 5-Year Plan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s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posal).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5. Shin HW, Choi BH, Lee KS, Jeong HS, Lee SY, Yeo NG, et al. The policy and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health care plan.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itiate the 1st Plans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cited 2019 Aug 26].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9&CONT_SEQ=345151.
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Strategic Plan FY 2018-2022 [Interne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cited 2019 Aug 26]. Available from: <https://www.hhs.gov/about/strategic-plan/index.html>.
8. NHS England. The NHS Long Term Plan. Leeds: NHS England; 2019.
9. National Health Service. Five Year Forward View [Internet]. London: National Health Service; 2014 [cited 2019 Aug 26]. Available from: <https://www.england.nhs.uk/wp-content/uploads/2014/10/5yfv-web.pdf>.
10. Public Health England. Strategic plan for the next four years: better outcomes by 2020 [Internet]. London: Public Health England; 2016 [cited 2019 Aug 26]. Available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16985/PHE_Strategic_plan_2016.pdf.
11. 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single departmental plan [Internet]. London: 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19 [cited 2019 Aug 26]. Available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partment-of-health-single-departmental-plan/dhsc-single-departmental-plan#contents>.
12.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Japan Vision: Health Care 2035. Tokyo: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13. Green A. An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for developing health systems.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4.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rd ed. Seoul: Gyeochuk Munwhasa; 2019.
15. Lee HJ, Kim S, Jang SI, Park EC. Current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plans in Korea. *Health Policy Manag* 2019; 29(3):368-37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9.29.3.368>.
16. Park EC. The urgency of reforming the healthcar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Health Policy Manag* 2018;28(2):105-106.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8.28.2.105>.
17. Moon JY, Park EC. Trend of benefit expenditu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age group, 2001-2016. *Health Policy Manag* 2017;27(4):371-37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4.371>.
18. Park EC. Moon Jae-in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3):191-198.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3.191>.
19. Park EC.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4):273-275.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4.273>.
20. Park EC.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9;29(2):99-104.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9.29.2.99>.